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에너지위원회 위촉위원에 시·도지사협의체 추천위원 포함〉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69호)

2026. 3.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에너지위원회 위촉위원에 시·도지사협의체 추천 위원을 1명 이상 포함 ...	2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2일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하여 에너지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급정책, 비상시 에너지 소비절감 대책 등을 심의하는 에너지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에너지 수급에 대한 지역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Ⅲ. 검토의견

1. 에너지위원회 위촉위원에 시·도지사협의체 추천 위원을 1명 이상 포함

개정안은 에너지 수급정책·비상시 에너지 소비절감 대책 등을 심의하는 에너지위원회의 위촉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 략)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위원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u>	⑤ ----- ----- ----- ----- ----- ----- <u>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4 명 이상,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 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1명 이상</u> -----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에너지위원회는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

현행법 제9조¹⁾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5개 관계부처(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차관급 공무원 등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은 에너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1) 「에너지법」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된다.

④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관이 위촉하되, 에너지관련 시민단체²⁾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10조³⁾에 따라 위원회는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국내외 에너지개발에 관한 사항,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2) 「에너지법 시행령」 제2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②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정관에 따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 한다.

1.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업
2.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3.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친화적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
4. 에너지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업
5.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조정과 예방에 관한 사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가 위촉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기간 및 제출서류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에너지법」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에너지개발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와 관련된 교통 또는 물류에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5.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에 관한 사항
8.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대책 중 에너지에 관한 사항
10.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에너지에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에너지위원회 구성 현황(2026.2.현재)]

구분		위원 수	비고
위원장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당연직	위원	5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차관
위촉직		3	-정책 일반
		1	-법률
		1	-탄소중립
		1	-효율
		1	-에너지기술
		2	-전력
		2	-재생
		1	-수소
		1	-자원
		1	-원전
		5	-시민단체 추천
		총 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에너지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변화된 기후가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급정책, 비상시 에너지 소비절감 대책 등을 심의하는 에너지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지역 의견을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이에 개정안은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풍부한 위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시민단체 추천인원 5인을 4인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4)에 따라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

천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에너지 관련 정책의 수립 등에 있어 지역 실정과 주민 영향을 충실히 반영하고, 정책의 수용성 및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8조⁵⁾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4조⁶⁾

4)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 의장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는 그들 모두가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그 협의체·연합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 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체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밝혀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8조(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①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4조(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에도 「지방자치
 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
 하는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도
 록 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536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